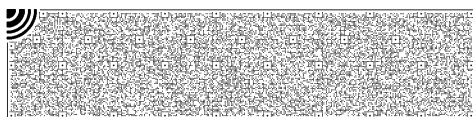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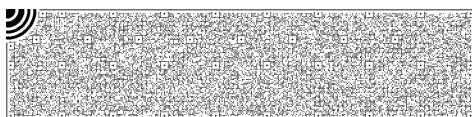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149호

의 안 명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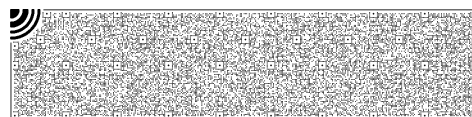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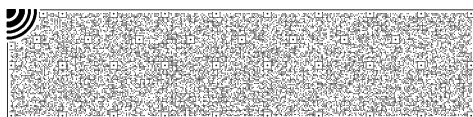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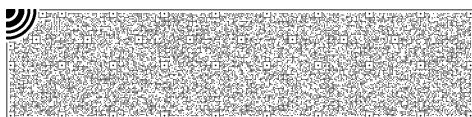
의 결 일 2026. 5. 18.

주 문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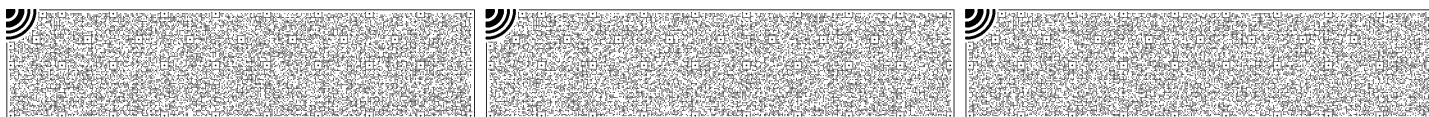
【별지】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

202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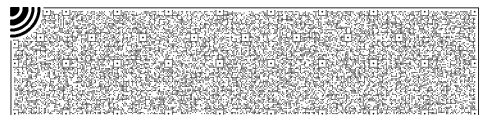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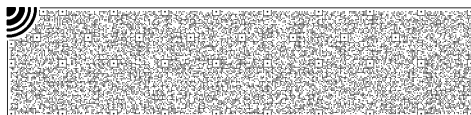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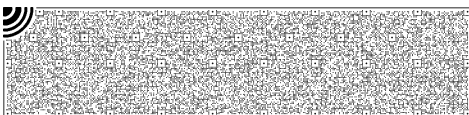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현황 및 문제점	2
III. 개선방안 및 조치사항	6
[붙임] 조치대상 기관 목록	8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7조

□ 추진배경

○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병무청은 '04년부터 병역명문가 제도* 시행

*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제도

- 병무청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시설이용료 면제·감면 등 예우 사업을 확대 추진

○ 그러나, 다수의 지방정부는 병역명문가 제도의 예우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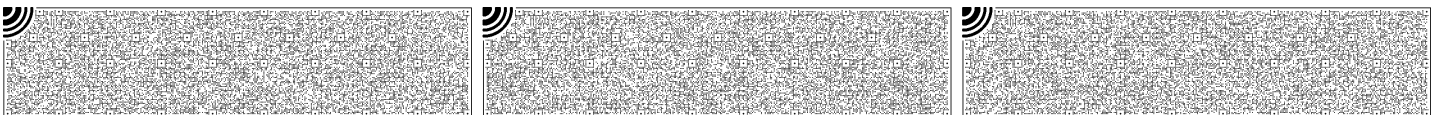
- 국가 단위의 병역 이행에 대한 예우가 지역기준으로 제한되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한계 발생

○ 이에,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체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도개선 건의사항



II. 현황 및 문제점

□ 제도 운영 현황

- (개요) 병무청은 3대*가 모두 성실히 현역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표창 수여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

* ① 조부와 ② 부·백부·숙부 그리고 ③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

**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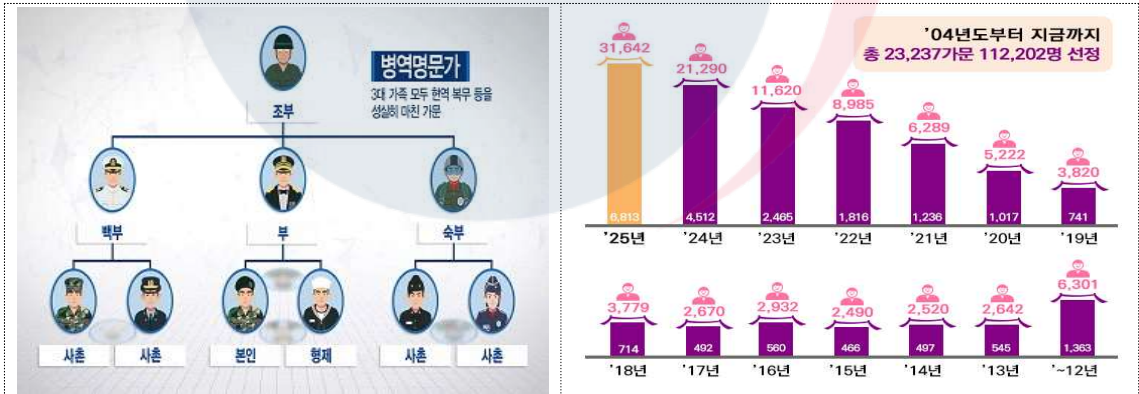
— <「병역법」> —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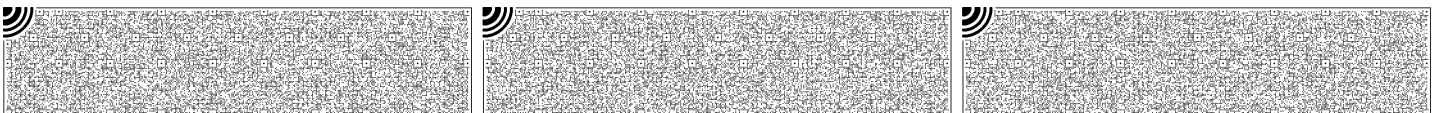
- (방식) 신청 및 심사를 거쳐 매년 선정하며, 병역명문가증 발급 및 표창 수여 ※ '04년부터 '25년까지 총 23,237여 가문 112,202명

《 병역명문가 가계도 및 연도별 선정현황 》

(출처: 병무청 누리집)



참고 병역명문가증 / 병역명문가 문패 견본



○ (예우) 병무청은 국·공립, 지방정부 및 민간시설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시설이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료 등 감면·면제

- 각 지방정부는 조례 제정을 통해 예우 대상 및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설물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 감면·면제

* 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보건소 진료비, 평생학습관 수강료, 박물관 관람료 등

< 관련 법규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병무청 훈령)

제2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 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 ☆☆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제7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지역제한)** 병역명문가 제도는 국가 단위 병역이행에 대한 예우임에도 다수의 지방정부가 거주지 기준으로 예우 대상을 제한
 - 광역 지방정부의 약 76.4%(13개), 기초 지방정부의 82.7%(187개)는 예우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지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
 - ※ 특히, 대전·울산·경북 내 모든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거주지로 한정하여 예우
 - 해당지역 거주여부에 따라 예우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민원사례  **병역명문가 혜택 지역제한 폐지 요청 민원**

- 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병역명문가를 선정하여 여러 예우 정책을 주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그 지역 주민에만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속좁고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5. 4.)
- 병역명문가로 국가(병무청)에 등록되어 병역명문가 증서와 휴대용 증과 패, 배지를 받았는데 아니 일개 ○○시에서 이를 무시하고 주소를 둔 ○○시로 한정한다면 병역명문가 갈라 치기는 물론 사기를 떨어 트리고 역행하는 제도 아닌가요? (‘24.12.)
- 병역명문가의 주차료 감면내용 조례가 지자체 마다 있고, 없고 다른데 병무청에서 지자체에 한번 더 독려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병역명문가가 주차료 감면이 문제가 아니라 긍지를 갖도록 주차료 감면 조례를 개정토록 독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주차료 면제는 병역명문가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지자체 어디라도 감면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

- **(조례 미제정)**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관련 조례가 없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지원에 대한 근거 부존재 및 관리 소홀
 - ※ 인천광역시 옹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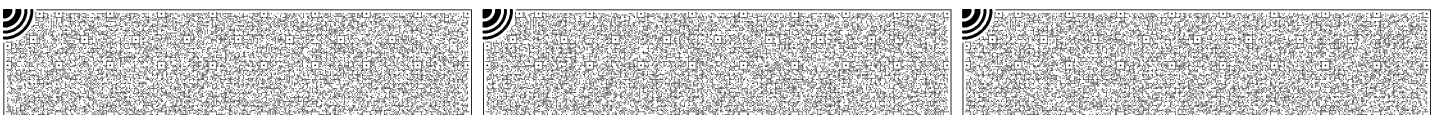


《 거주 무관 지방정부 현황 수 》

(출처: '26. 2월말 기준, 각 지방정부 조례)

구분	지방정부			광역	기초	거주 무관 지방정부
	총 기관 수(a)	거주 무관 기관 수(b)	비율 (b)/(a)			
전체	243	42	17.3%	4	38	
서울	26	1	3.8%	-	1	구로구
부산	17	1	5.9%	-	1	기장군
대구	10	1	10.0%	-	1	중구
인천	11	1	9.1%	1	-	본청
광주	6	4	66.7%	-	4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	6	-	-	-	-	-
울산	6	-	-	-	-	-
세종	1	-	-	-	-	-
경기	32	9	28.1%	1	8	본청, 평택시, 고양시, 오산시, 시흥시, 의왕시, 파주시, 포천군, 양평군
강원	19	8	42.1%	-	8	춘천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충북	12	2	16.7%	1	1	본청, 청주시
충남	16	2	12.5%	-	2	당진시, 부여군
전북	15	8	53.3%	-	8	전주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	23	2	8.7%	-	2	구례군, 장성군
경북	23	-	-	-	-	-
경남	19	2	10.5%	-	2	김해시, 합천군
제주	1	1	100%	1	-	본청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상 자치법규 조회 결과에 따른 조례의 적용범위 참고



Ⅲ. 개선방안 및 조치사항

□ 개선방안

- **(병무청)** 지방정부 등이 병역명문가 예우의 지역제한 완화에 협조하도록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

《 (예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2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③ <신 설>	제2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지역을 이유로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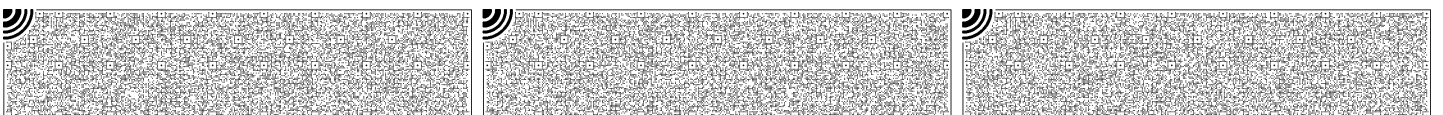
- **(지방정부)** 공공시설 감면 등 적용대상의 해당 지역 거주지 및 주소지 요건 폐지

※ 감면 범위 및 비율, 예우범위 가족 확대 여부 등은 각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예시)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u>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좌동) 2. "예우대상자"란 <u>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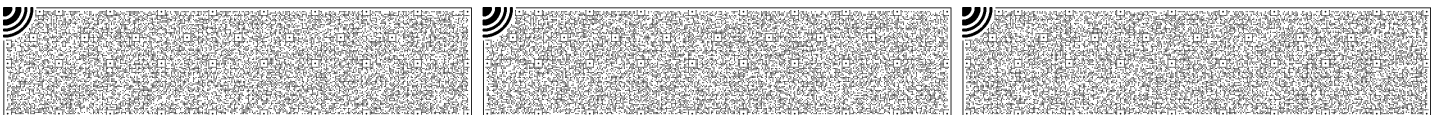
- **(인천 옹진군)** 병역명문가 예우·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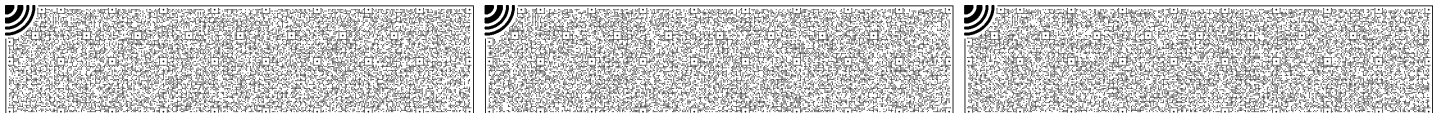
- 대상기관 : 병무청, 201개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치사항	대상 기관	조치기한
① 병역명문가 예우의 지역제한 완화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개정	병무청	'26. 9.
② 병역명문가 예우의 지역제한 폐지 ○ 해당 조례 적용범위 등 관련 조문 개정	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200개 광역·기초 지방정부 (붙임 목록 참고)	'26. 12.
③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 제정 ※ 제정 시 적용대상을 모든 병역명문가로 설정	인천 용진군	'2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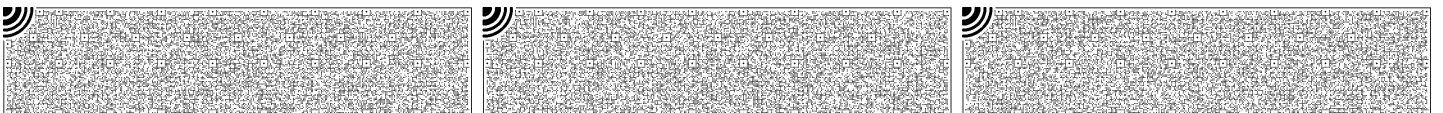


붙임 **조치 대상 기관 목록**

구분	① 지역 제한		② 조례 미제정
	광역	기초	
전체	(13)	(187)	(1)
서울	서울특별시 본청 (1)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4)	
부산	부산광역시 본청 (1)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15)	
대구	대구광역시 본청 (1)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8)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9)	옹진군 (1)
광주	광주광역시 본청 (1)	남구 (1)	
대전	대전광역시 본청 (1)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	
울산	울산광역시 본청 (1)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1)	-	
경기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군포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23)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1)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영월군,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0)	



구분	① 지역 제한		② 조례 미제정
	광역	기초	
충북	-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10)	
충남	충청남도 본청 (1)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13)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1)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6)	
전남	전라남도 본청 (1)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강진군 (20)	
경북	경상북도 본청 (1)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22)	
경남	경상남도 본청 (1)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16)	
제주	-	-	



참고

관련법령

□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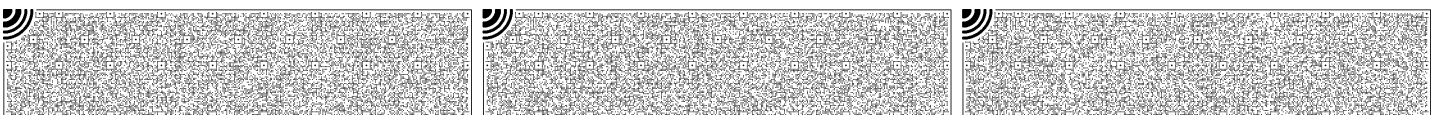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 현역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② '생략'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①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①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와 법 제82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병무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병무청장이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정책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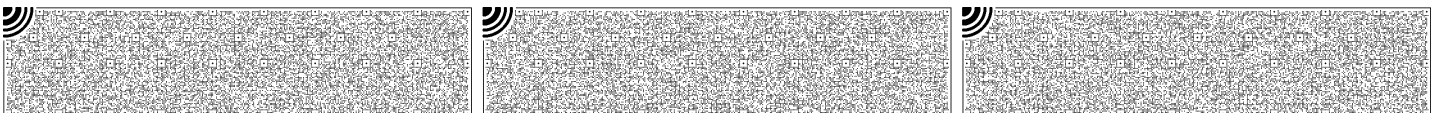
□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표창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개정 2025.7.18.>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병무청장 및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인천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패 수여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제6조(우대)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도에서 설치·관리·위탁하는 기관 이용 시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 감면 또는 면제
2.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휴양 시설 및 의료·체육 시설의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3. 그 밖에 병역의무 확산과 병역명문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5월 18일

위원장 정 일 연

위원 한 삼 석

위원 조 소 영

위원 이 명 순

위원 홍 봉 주

위원 김 태 영

위원 신 대 희

위원 권 석 원

위원 최 명 규

위원 이 흥 주

위원 이 태 한

위원 김 바 울

위원 신 상 욱



정본입니다.

2026. 5. 18.

국 민 권 의 위 원

